

## 창업보육실 입주 제외 대상 업종

□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에 따른 입주 제외 대상
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

1. 일반유흥주점업
2. 무도유흥주점업
3.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4.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 
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

□ 「10차 표준산업분류」 따른 입주 제외 대상 업종

- ① D.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(35)
- ② E.수도, 하수 및 폐기물처리, 원료 재생업(36~39)
- ③ G.도매 및 소매업(45~47)
- ④ H.운수 및 창고업(49~52)
- ⑤ I.숙박 및 음식점업(55~56)
- ⑥ K.금융 및 보험업(64~66)
- ⑦ L.부동산업(68)
- ⑧ 711.법무관련 서비스업
- ⑨ 712.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
- ⑩ 7153.경영 컨설팅 및 공공 관계 서비스업
- ⑪ 75.사업 지원 서비스업
- ⑫ 76.임대업; 부동산 제외
- ⑬ O.공공 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(84)
- ⑭ P.교육 서비스업(85)
- ⑮ Q.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(86~87)
- ⑯ R.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(90~91)
- ⑰ 94.협회 및 단체
- ⑱ 96.기타 개인 서비스업
- ⑲ U.국제 및 외국기관(99)

\*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[kssc.kostat.go.kr](http://kssc.kostat.go.kr)) 참고

\* 입주 제외 대상 업종의 하위 분류(중·소·세분류) 업종 모두 제외 대상에 포함